

메리츠코리아연금증권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 (펀드코드: 15634)

투자 위험 등급 5 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b>낮은 위험</b>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메리츠코리아연금증권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메리츠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 투자신탁으로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집합투자업자	메리츠자산운용(주) (TEL. 02-6320-30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 조좌(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
효력발생일	2016. 12. 13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A	C-1	S-P	Ce	
가입자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가입제한이 없는 수익증권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 전용	전자매체(온라인)전용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2% 이내	-	-	-	
환매수수료	-	-	-	-	
보수 (연,%)	판매	0.1000	0.1500	0.0500	0.0700
	운용 등	운용 : 0.1700, 신탁업자: 0.0200, 일반사무관리: 0.0100			
	기타	0.0000	0.0000	0.0000	0.0000
	총보수·비용	0.3000	0.3500	0.2500	0.2700
	합성총보수·비용	0.3088	0.3589	0.2589	0.2788

※ 주석사항

-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기타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의 경우, 투자목적·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을 추정치로 기재하였습니다.
- 보수의 지급시기 : 매 3개월 후급, 증권거래비용과 기타비용은 사유발생시 지급
-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 시(오후 5 시)이전 : 제 2 영업일</li> <li>· 17 시(오후 5 시)경과 후 : 제 3 영업일</li> </ul>	<p>환매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 시(오후 5 시)이전 : 제 3 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제 3 영업일 지급</li> <li>· 17 시(오후 5 시)경과 후 : 제 4 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제 4 영업일 지급</li> </ul>
-------	--	---

## 기준가

-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방법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 투자신탁으로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채권은 시중 실세금리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비교지수 : KIS채권종합03Y X 90%

### 2. 투자전략

#### (1) 기본운용전략

- 이 투자신탁은 모 투자신탁('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신탁재산의 100% 이하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모투자신탁은 시장국면별 듀레이션 조정 전략 및 스프레드 전략을 통한 차익거래, 섹터 및 만기 비중 조정을 통한 크레딧전략을 통해 추가수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2) 세부운용전략(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 명칭	주요 투자전략	투자비중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① 듀레이션 조정전략 (펀드 잔존만기 조정) - 금리 예측과 추세분석 결과에 따라 금리국면별(하락기, 횡보기, 상승기) 추세에 순응하는 탄력적인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 조절로 위험관리 ② 상대가치 전략 : 신용등급과 만기 비중을 고려한 상대매매 전략에 초점 (고평가된 종목 매도, 저평가된 종목 매수)	100%이하

\* 듀레이션: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가중 평균 만기로, 채권 가격의 이자율이 변화하는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된다. 듀레이션이 길면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른 가격의 변동도 크게 나타난다.

주1) 투자운용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용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장태민	1962	이사	13 개	7,872 억원	- 메리츠자산운용 Fixed income 매니저 - 동양자산운용 LT자산운용본부 운용총괄 - 동양생명 투자파트 채권운용, 운용총괄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f.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15.11.29 ~16.11.28	14.11.29 ~15.11.28	13.11.29 ~14.11.28	12.11.29 ~13.11.28	11.11.29 ~12.11.28
종류 C-1	1.38	2.11	4.83	1.27	4.72
비교지수	1.62	2.35	4.91	2.63	4.98

주1) 비교지수 : KIS채권종합03Y\*90%

주2) 종류C-1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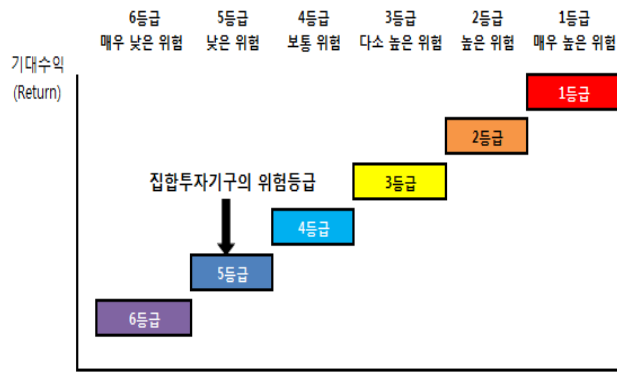
### 5. 주요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의 채권형 모투자신탁은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채권형 모투자신탁은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이 투자신탁의 채권형 모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 또는 계약상대방이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당해계약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채무 등의 지급유예, 채무증권 등이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 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채무증권(계약) 등으로의 전환, 변제기간이 장기간 유예 되는 등의 방식으로 당초의 권리가 변경되어 투자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위험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환매제한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6. 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형 모 집합투자기구에 100% 이하를 투자하는 채권형 자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0.78%)을 고려하여 6개의 투자위험 등급 중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고 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은 메리츠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으로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7. 위험관리

- 위험관리체계

- ① 사전적 리스크 관리 : 채권 및 CP 유니버스 및 듀레이션 허용한도 등 투자 가이드라인 설정
- ② 정기적인 리스크 모니터링 : 듀레이션 및 신용등급 준수여부, 운용 성과평가 수행
- ③ 사후적 리스크 관리 : 위반시 해소절차에 입각한 단계별 위험요인 해소, 체계적인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및 사후관리

##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 1.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1월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 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전환절차 및 방법

①이 투자신탁은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간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된 전환형 투자신탁입니다. 전환대상 투자신탁 상호간에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횟수는 제한이 없고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전환대상펀드 : 메리츠코리아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메리츠코리아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메리츠코리아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②종목전환시 매입관련 사항(전환시 기준가격)

구분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전환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 (15시30분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 (15시30분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전환하고자 하는 펀드 매입(전환)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 (15시30분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 (15시30분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전환하고자 하는 펀드 매입(전환)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17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17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전환하고자 하는 펀드 매입(전환)
전환청구 취소(정정)	오후3시30분 이전 : 전환청구일 당일 오후 3시30분이전까지 가능 오후3시30분 경과후 : 전환청구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전환청구의 취소(정정)는 전환청구일 당일 오후 5시까지

※ 전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IV. 요약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eritzam.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eritzam.com)